



2023학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설명회



백석문화대학교

권향임 교수

목 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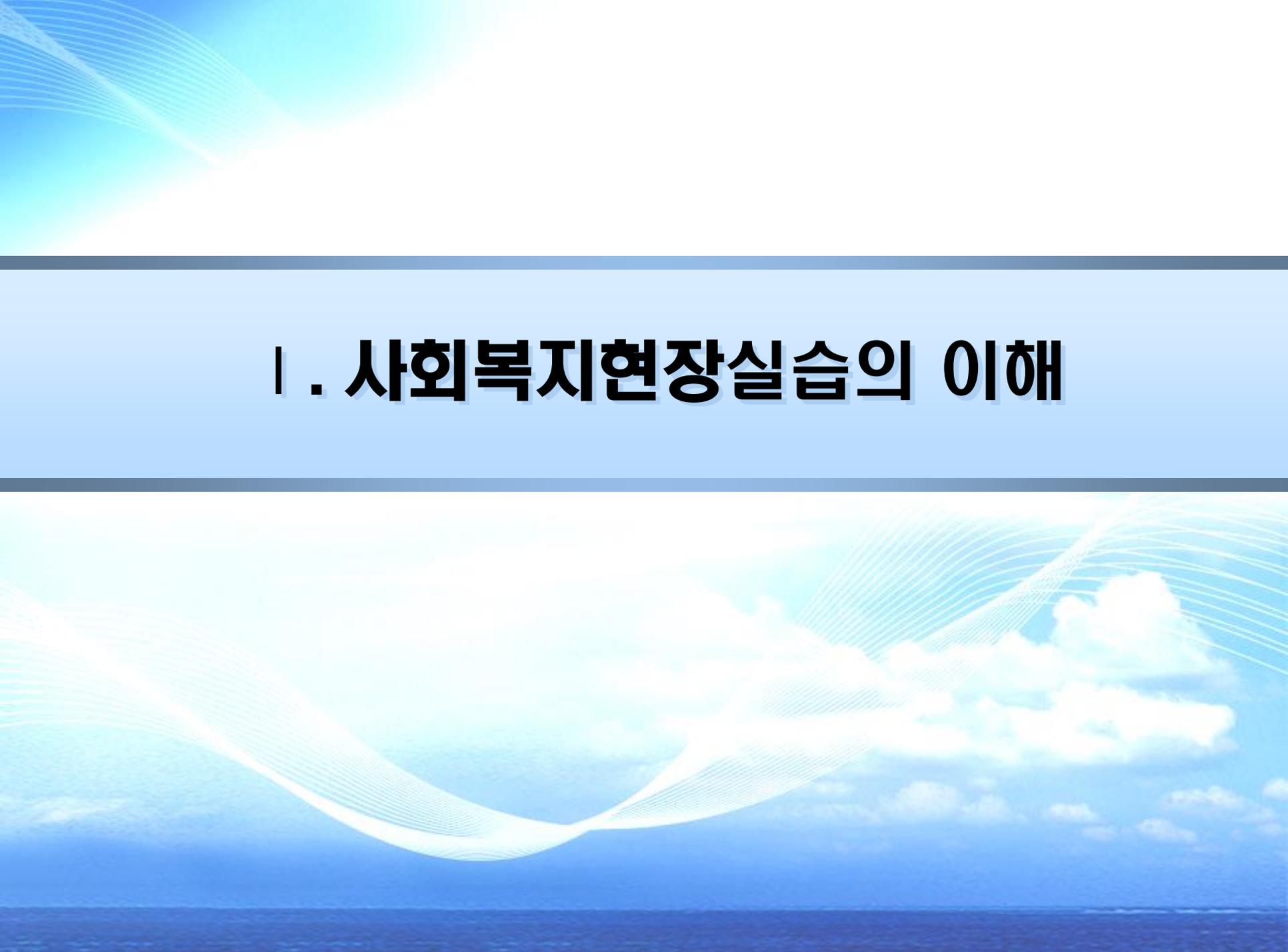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II

사회복지현장실습행정과 절차

III

부록(사회복지사업법 실습규정)

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vibrant blue color palette. The top half is a solid light blue, while the bottom half is a darker blue with a pattern of white, wavy lines that resemble ocean waves or stylized clouds.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modern.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주체

학생

실천지식과 기술 적용
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습득
사회복지사로서의 적성 탐색
취업기회확보

기관

미래의 사회복지사 훈련
서비스 영역 확장
실천의 질적 수준 향상

대학

교육과 실천의 교량역할
현장과의 관계지속
교육평가 및 과정개발
취업기회 확보

실습교육의 핵심적 내용

1. 전문적 발달
2. 행정적 발달
3. 정책 및 지역사회 측면
4. 기본적 대인관계 기술
5. 클라이언트 체계 개입

* Fortune(1994)의 실습지도의 핵심적 내용과 기술

현장실습과 실습수업

- **방학 중 실습: 선 실습 후 실습수업수강**
- **학기 중 실습: 실습과 실습 수업 동시 진행**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
- **실습기관분석, 지역사회분석, 관련법규, 서비스전달체계 이해**

학교에서의 실습수업

- 수업은 강의, 발표, 토론, 수퍼비전으로 이루어짐
- 현장 전문가 특강
- 현장실습점수와 학교수업점수가 50%씩 반영
- 한 학기 수업은 15주 3학점
- 방학 중 실습은 세미나수업을 방학전 2-3회, 나머지는 개강 후 수업
- 실습자료 제본제출(기말고사 기간 내 제출/제본규정 숙지)
- 방학 중 실습생, 학기 중 실습생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됨

학기 중 실습 & 방학 중 실습

[학기 중 실습]

- 담당교수의 정기적인 실습지도
- 15주 실습이므로 클라이언트의 변화과정 관찰가능
- 기관 전체의 사업과 사회복지사의 업무파악 한계
-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와 관계형성 제한

[방학 중 실습]

- 주5회 실습을 통해 기관 운영 전반 파악
-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와 관계형성 용이
- 사례개입 및 프로그램 진행 등 주요업무수행기회 증가
- 학교의 즉각적인 실습지도 한계
- 계절특별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동원되어 체계적 실습어려움

실습시간 및 기간

[학기 중 실습]

- 주1-2회, 일당8시간 이내(총160시간 이상)15주
- 대부분의 기관에서 화요일 실습(수업일정 확인)

[방학 중 실습]

- 일일 최소4시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5일 가능
- 4주 160시간

실습신청서(프로파일)작성

- 대부분의 실습기관에서 실습신청서 서류로만 선발
- 실습생 프로파일을 실습생의 첫인상
- 너무 간결하면 성의 없어 보임. 한 항목에 5줄-10줄 정도 작성
- 실습신청서+실습생프로파일+실습계획서
- 기관양식이 있으면 대체하되 실습계획서 내용은 포함
 - * 학과홈페이지 -자료실-실습/자격증자료실-사회복지전공에서 실습생프로파일 참조

실습생프로파일1

실습생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심화실습 희망분야	<input type="checkbox"/> 평생학습사업 <input type="checkbox"/> 상담사업 <input type="checkbox"/> 경로당활성화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가복지(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취업상담업선사업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사업				
실습생명	김예담	성별	여	생년월일	
소속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전공 2학년(3학기)				
주소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E-mail					

2. 이수 전공과목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가족복지론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경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장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3. 경력

구분 (취업, 실습, 봉사)	기관	기간	내용
봉사	천안종합사회복지관	2019.03. ~2019.06.	청소년 교육지원 및 정서지원 멘토링
봉사	천안 노인종합복지관	2020.08.24. ~2021.07.18.	서포터즈 봉사활동(세대통합 프로젝트 전문봉사), 업무보조(서류정리 및 단순 행정업무)
봉사	지역아동센터	2020.01.02. ~(현재)	자원봉사 업무보조

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5. 실습 기관 선택 이유

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8.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

9. 취미 및 특기

10.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

실습계획서 작성기준

실습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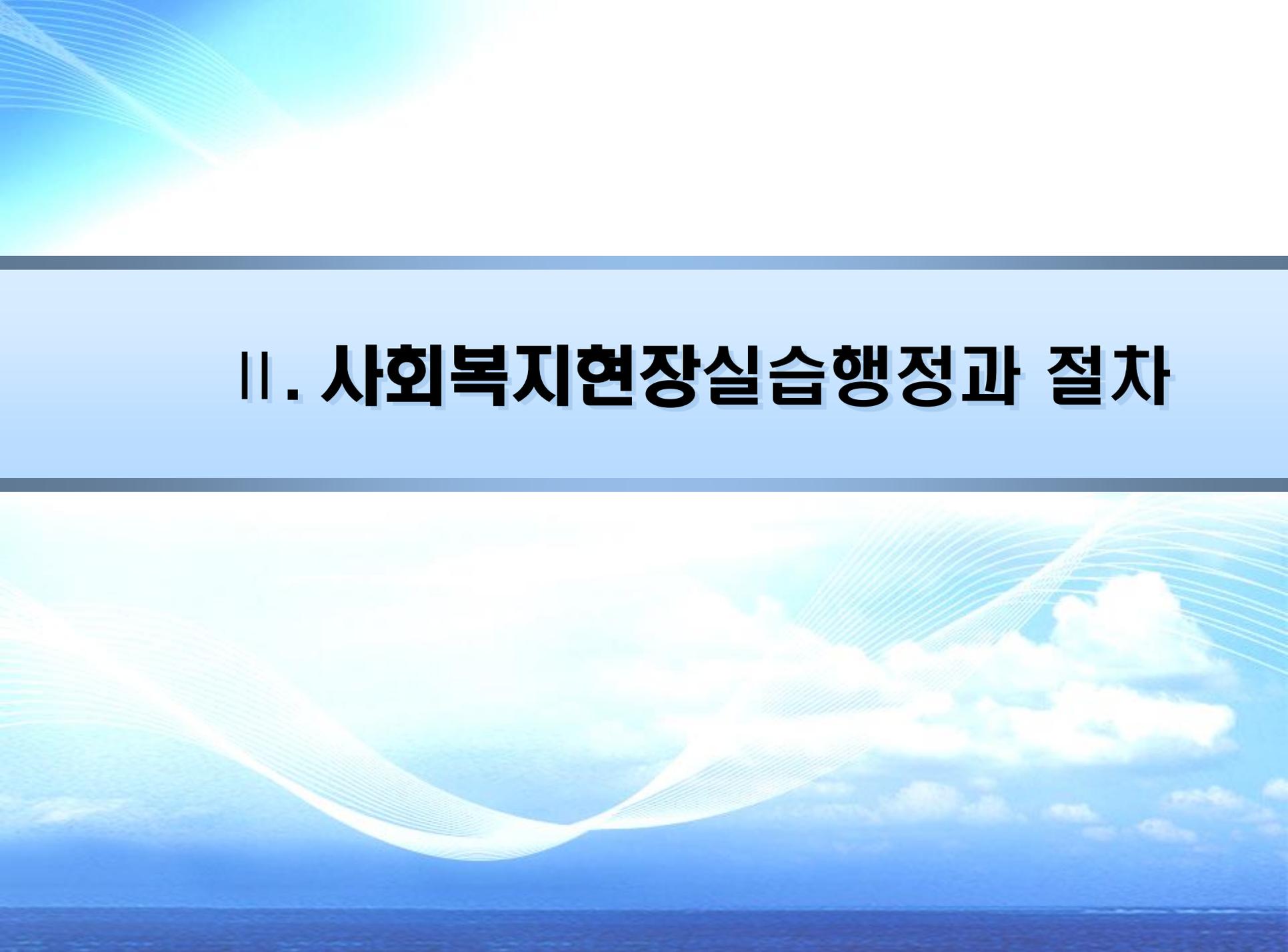
목표의 측면	세부목표 (측면의목표당1-3개)	목표성취 전략들 (측정가능하게 구체적으로)	평가 (목표달성 여부를 무엇으로 평가할지)	점수 (3점이나5점척도)
전문적 발달 측면의 목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감 형성, 개인적, 전문적 성장, 자아인식, 가치 및 철학, 윤리적 사명감 등)				
행정적 측면의 목표 (기관살림이념, 철학, 역사, 구조, 조직, 관리 파악 등)				
지역사회 연계 측면의 목표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식, 사회복지정책 등)				
기본적 대인관계 측면의 목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수퍼바이저 및 동료, 직원과의 관계기술 등)				
Ct체계 개입기술 측면의 목표 (계획, 실행, 평가기술, 인간행동과 다양성 지식의 적용, 면접 및 사정기술 등)				

실습생이 지켜야 할 의무와 윤리

- **지각 및 결석**
- **비밀보장**
- **자격과 한계의 인정**
- **기록유지**
- **이중관계**
- **금품수수금지**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실습생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

- **실습 업무량 및 업무내용**
- **적절한 실습지도 부재**
- **실습기관의 변경**
- **윤리적 딜레마**
- **실습생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
- **실습생 개인의 안전**
- **성희롱 문제**
- **실습기관이나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
- **실습생 자신의 정서적 문제**



II. 사회복지현장실습행정과 절차

목 차

실습규정

1. 현장실습신청
2. 현장실습과 휴학

유의사항

1. 실습준비
2. 실습진행
3. 실습종결

실습규정

1. 현장실습신청

• 실습선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 상기 9과목 중 최소 4과목 필수 이수
- 실습선수과목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현장실습 가능

실습설명회 불참: 실습 공문 발송 불가

- 실습설명회는 수업1회차로 반영(1회 결석시 3점 감점)
- 실습설명회 불참시 대체과제 이수를 통해 실습이 가능하나 수업1회 결석으로 처리

2. 현장실습과 휴학

실습유의사항

* 실습기관에 공문발송 이후에는 실습지 변경 불가

실습준비 01

- 실습기관탐색
- 기관실습신청 및 면접
- 공문발송신청
- 실습사전교육

실습진행 02

- 기관 현장 실습
- 실습세미나수업 수강

실습종결 03

- 실습일지 제본
- 실습 평가

* 공문발송신청

실습공문신청서 및 실습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하여 학부메일로 신청

실습기관선택

1. 실습기관 선정은 학생 개인이 탐색[학교에서 정해주지 않음]
 2. 실습기관은 3-4개 기관을 지원하고 먼저 선정된 기관으로 확정
 3. 보건복지부 승인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참조]으로 우리 학부 실습기관 목록 참고
 4.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작성은 사회복지학부 사무실[창조관1005호]에 비치된 실습일지 참고
 5. 실습비는 학생이 부담하며 사회복지사협회 권고사항은 10만원이며 과도할 경우 지도교수에게 문의할 것[식비는 별도부과 가능]
- [후원금이나 교육명목 추가비용 요구, 실습비가 10만원 넘는 기관 검토]

실습기관선택

변경사유		운영비(프로그램 기획·진행비) 추가, 항목별 지출액 증액					
변경전	수입(단위 : 원)			지출(단위 : 원)			
	항목	산출기초	금액	항목	산출기초	금액	
	실습비	100,000*1명	100,000원	교통비	2,500원*6회	15,000	
				다과료	5,000원*4회	20,000	
				식대	-	0	
				실습 운영비	우편비	5,000원*1명	5,000
					회의비	10,000원*4회	40,000
	교재비	20,000원*1권	20,000				
기타	-	0					
수입합계	100,000원		지출합계	100,000원			
변경후	수입(단위 : 원)			지출(단위 : 원)			
	항목	산출기초	금액	항목	산출기초	금액	
	실습비	200,000원*1명	200,000원	교통비	2,500원*6회	15,000	
				다과료	5,000원*4회	20,000	
				식대	-	0	
				실습 운영비	우편비	5,000원*1명	5,000
					프로그램비	25,000원*3회	75,000
	회의비	15,000원*4회	60,000				
교재비	25,000원*1권	25,000					
기타	-	0					
수입합계	200,000원		지출합계	200,000원			

실습기관선택

❖ 실습기관탐색 및 컨택

- 학과 홈페이지 실습자료실
- 실습기관목록을 참고하여 실습기관 선택 권장

❖ 실습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 기관에 실습지원을 하기 전, 반드시 실습조교에게 사전문의
- 보건복지부 기관목록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 가능

❖ 실습생 모집 공고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https://www.bscu.ac.kr/social/1489/subview.do>)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준비

[공문발송시 필요서류]

- 실습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계획서
- 실습공문 발송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상해보험가입관련)
- 학과 홈페이지 실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학부 E-mail로 제출

[주의사항]

- 학부 E-mail :btt1029@bscu.ac.kr로 제출
- 기관에서 특별히 공문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공문발송은 필수
- 실습공문 발송신청서 반드시(기관 팩스번호 필수 기재)

필수제출서류(5종)

1. 실습공문 발송신청서

❖ 실습공문 발송신청서 양식 ❖

분류	구분	내용		비고	
실습생	성명				
	학과/학년				
	학번				
	연락처	핸드폰			
		e-mail			
	실습구분	<input type="checkbox"/> 방학 중 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 중 실습			
	실습설명회 참석여부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실습의견학기 설명회만 인정	
불참사유					
실습기관	기관명/ 주소	기관명			
		주소			
	기관연락처	전화			
		FAX			
	실습담당자 /직급				
	실습기간				
기타					

위의 내용과 같이 실습을 신청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습생: (인)

사회복지학부장 귀하

필수제출서류(5종)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백석문화대학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현장실습 단체보험 가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안내

백석문화대학교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백석문화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현장실습 단체보험 가입, 유지 및 지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학부(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습기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현장실습 보험 가입 목적 달성된 후 해당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현장실습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안내

백석문화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현장실습 단체보험 가입, 유지 및 지원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부터 보험금 청구 시효 만료일까지

본 사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3.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백석문화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의거, 아래의 목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동부화재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현장실습 단체보험 가입, 유지 및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부(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습기간

- 주민등록번호 법적 근거 : 보험업법 제102조5항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 기간]

실습기간 : 2022. 06. 17.~2022. 08. 13.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현장실습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백석문화대학교의 홈페이지(<http://www.bscu.ac.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석문화대학교 귀중

필수제출서류(5종)

3. 실습신청서

실 습 신 청 서

○ 실습기관:

1. 실습생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 속	백석문화대학교	학과/ 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학년/ 학기	2/2
현주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E-Mail					

2. 실습 의뢰내용

실습 부서	지역아동센터
실습 분야	예) 아동복지
실습 내용	사회복지사 직무
실습 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신청을 의뢰하며 실습생 포트파일을 동봉합니다.

신청인(학생명) : _____ (인)
실습지도교수 : _____ (인)
학 부 장 : _____ 권향임 (인)

필수제출서류(5종)

4.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생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사진)	실습생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전공 2학년(1학기)	
	주소		
	전화번호	집:	핸드폰:
	E-mail		

2. 이수 전공과목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가족복지론	●	
이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장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3. 경력

구분 (취업, 실습, 봉사)	기관	기간	내용
봉사	000 복지관	2019년0월0일	학습지원봉사

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5. 실습 기관 선택 이유

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필수제출서류(5종)

4. 실습생 프로파일

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

8.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

1)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	2) 개인적인 특성 측면
---------------------	---------------

9. 취미 및 특기

--

10.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

--

필수제출서류(5종)

5. 실습계획서

실습계획서

목표의 측면	세부목표 (측면의목표당1-3개)	목표성취 전략들 (측정가능하게 구체적으로)	평가 (목표달성 여부를 무엇으로 평가할지)	점수 (3점이나5점척도)
전문적 발달 측면의 목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감 형성, 개인적, 전문적 성장, 자아인식, 가치 및 철학, 윤리적 사명감 등)				
행정적 측면의 목표 (기관설립이념, 철학, 역사, 구조, 조직, 관리 파악 등)				
지역사회 연계 측면의 목표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식, 사회복지정책 등)				
기본적 대인관계 측면의 목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수퍼바이저 및 동료, 직원과의 관계기술 등)				
Ct체계 개입기술 측면의 목표 (계획, 실행, 평가기술, 인간행동과 다양성 지식의 적용, 면접 및 사정기술 등)				

필수제출서류(5종)

5. 실습계획서(직무역량기반 현장실습 신청서)

2022-하계 방학중 직무역량 기반 현장실습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학부(과)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성별	연락처	HP)		
수강신청 여부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미신청사유 : _____)			

실습 의뢰내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름	업체 연락처
업체 주소	

직무역량 구분(담임교수 작성)

인재양성유형	직무명	산업체명	현장실습분야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실습기간 동안 현장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배우고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실습기간 동안 실습업체의 제규정을 엄정 준수하고 위반 시는 학교의 조치에 순응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후 소정의 현장실습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 또는 산업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실습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2022. . .

실 습 생 : _____ (서명)

보 호 자 : _____ (서명)

지도교수 : _____ (서명)

실습진행

기관현장실습

- 출근부(출석부) 작성
- 기관양식이 없을 경우, 학교 양식 사용
- (학과홈페이지 자료실/실습 참고)

실습수업 수강

- 방학 실습: 사전수업 총2-3회 세미나 진행
- 수강신청: 방학 중 실습진행 후 2학기 초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

실습종결(기관평가)

1. 실습평가표

- 실습기관에서 평가
- 학과 홈페이지 실습자료실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도착해야 함

2. 실습확인서

- 최신버전(2021.4.15)으로 안내(학생이 슈퍼바이저에게)
- 학과에서 직인 완료 후 학생에게 안내-반드시 수령하여 본인 보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본인이 (학과에서 실습 확인서 단체신청 원본1부 이외 보관하지 않음)

실습종결(기관평가)

<2021.04.15.개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신규발급, []재발급

(앞쪽)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기재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학교명	* 현재 소속중인 학교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 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된 등록번호 기재	
	기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지도자명	*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한 지도자명 기재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 - 호 ()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 시간	총 시간 (총 회, 1일 평균 시간)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인)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기관명	* 실습세미나 교육기관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세미나 교수명		학과명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시간)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교수 :

(서명 또는 인)

학과장 :

(직인)

한국사회복지시험회장 귀하

<2021.04.15.개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V] 신규발급, [] 재발급 (약속)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김실습	생년월일	990909
	휴대전화번호	012-3456-7890	학교명	00대학교 또는 00방송교육원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00복지관	실습기관 관리번호	2020-000-0000
	기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메가벤처타워 404호	전화번호	02-786-0845
실습기간	실습 지도자명	이지도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2-0000001호 (2020. 01. 01.)
	실습 기간	2020년 4월 1일 ~ 2020년 4월 30일		
	실습 시간	총 160시간 (총 20회, 1일 평균 8시간)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기관실습 지도자 : 이지도 (서명) 기관실습 실기관 : 00복지관 (서명)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V] 오프라인 / [] 온라인	교육기관명	00대학교 또는 00방송교육원
	실습세미나 교수명	박교수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학)	[V] 학사, [V] 석사, []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02-084-5786
	실습세미나 기간	2020년 3월 2일 ~ 2020년 6월 30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15회 (30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시간)	총 15회 (30시간)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7월 1일

실습세미나 교수 : 박교수 (서명) 학과장 : 정과과장 (서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제발급 사유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① 기관실습 실기관	보건의료부서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기관실습 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기관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④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⑤ 실습세미나 교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변형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메모: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1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메모: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2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신규발급 시 '신규발급'에 표시하고, 최초 발급 후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시 '재발급'에 표시
- [메모: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자리) 표기 필요
- [메모: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2
실습생의 실습 진행 당시 소속 교육기관명
- [메모: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2
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받은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재
※미선정 기관에서 실습 진행 시 실습 인정 불가
- [메모: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3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단에 기재된 자격번호와 하단에 기재된 자격증 취득일자 기재
- [메모: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3
종정별 대상자: 120시간 이상
개정별 대상자: 160시간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1일 4~8시간 진행됨에 따라 총 횟수와 1일 평균 실습시간 기재 필요
※오기재 또는 미기재 시 재발급 및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메모: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3
실습지도자 서명 시 전자파일 삽입은 불가하며 직접 작성 필요
※서명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
- [메모: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3
기관실습 실기관 직인은 전자파일 삽입 불가하며 담당자 직접 날인 필요
※직인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
- [메모: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4
실습세미나 교육기관의 교육 유형에 표시 필요하며, 교육기관의 유형과 실제 교육 방식 유형이 상이할 경우 교육 방식 유형에 표시 필요
- [메모: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4
실습세미나 교육기관명 기재 필요
실습생 인적사항의 학교명과 상이할 수 있음
- [메모: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4
실습세미나 교수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취득학위 표시 필요하며, 허위기재 시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자의 자격증 취소 처리 등 조치 예정
- [메모: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습세미나 회당 2시간 이상씩 총 15회, 30시간 이상 진행 필요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기재 시 총 횟수는 15회 이상, 시간은 30시간 이상 기재되어야 함
- [메모: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4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 기재 필요하며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15회 이상, 온라인 교육기관은 3회 이상 진행 및 기재 필요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씩으로 산정하여 기재 필요
- [메모: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4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시 전자파일 삽입은 불가하며 직접 작성 필요
※서명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
- [메모:1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5
실습세미나 진행 교육기관의 '학과장 직인' 필요하며, 전자파일 삽입 불가
※학과장이 없을 경우 총장 직인 또는 교육원장 직인 날인 필요
※직인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
- [메모: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2021-04-19 17:15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실습종결(학교평가)

1. 실습일지 제출

- 겉표지 : 학과홈페이지 실습자료실에서 다운
- A4용지, 용지방향(좁게), 양면으로 책 제본(스프링제본, 바인더 사용불가)
- 실습생 본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미흡 시 감점)

- 방학 중 실습 : 담당교수가 제출기한 결정
- 학기 중 실습 : 기말고사 기간 내에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제출한 제본은 학과사무실(창조관1005호)비치되며, 반납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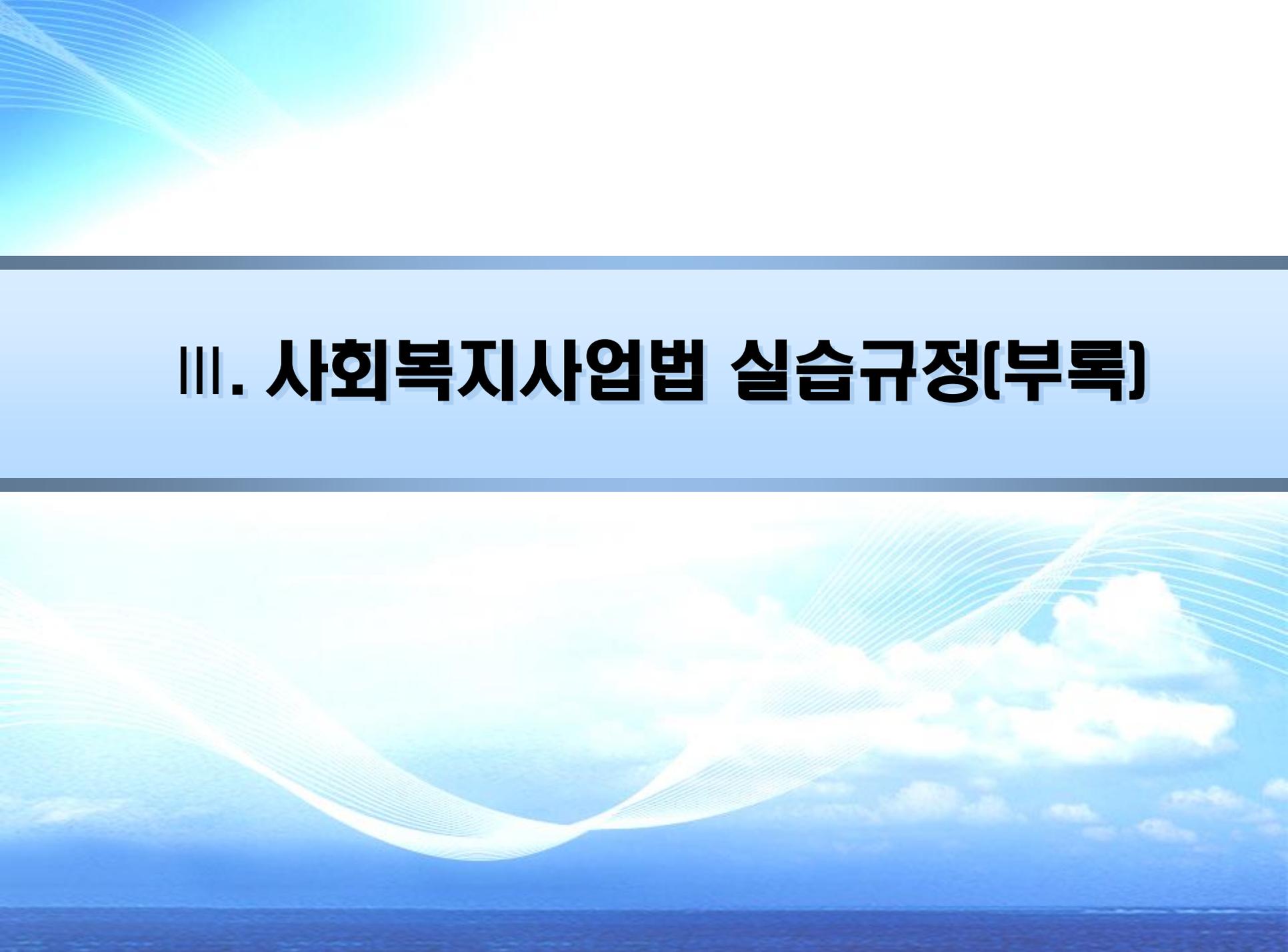
-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 실습 공지사항 참고**

<https://www.bscu.ac.kr/social/1489/subview.do>

- **사회복지학과 E-mail주소 : btt1029@bscu.ac.kr**
-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041-550-0644**
- **근무시간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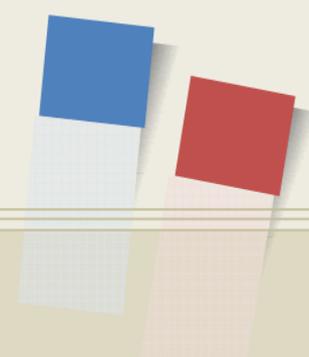
“자료유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담당 교수에게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vibrant blue color palette. The top half is a solid light blue, while the bottom half shows a dynamic scene of white, wavy lines resembling water or energy, set against a backdrop of a bright blue sky with scattered white clouds.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modern, and optimistic.

Ⅲ. 사회복지사업법 실습규정(부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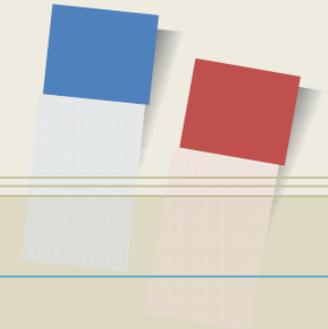
구분	실습시간	실습기관	실습세미나
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120시간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12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30시간

➤ '수강하고 있는'은 교육기관의 해당교과목 수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됨

적용예시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함(2019년도 사전실습 불인정)

적용예시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한 실습기관에서 기관실습 가능 (교과목 개설기간이 2019년 12월 10일 ~ 2020년 2월 10일 경우 변경 전 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 기관실습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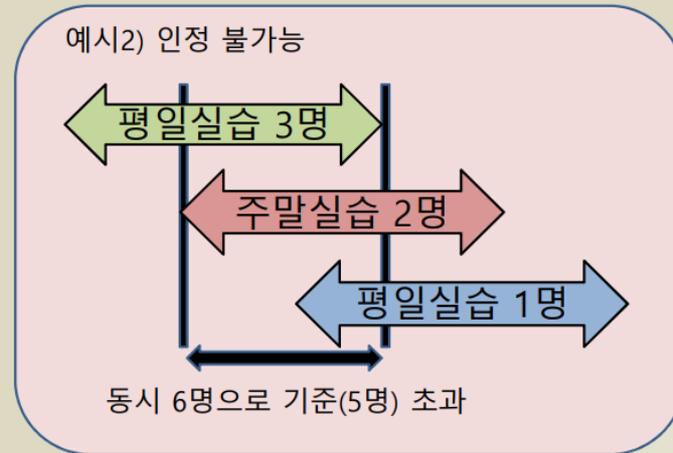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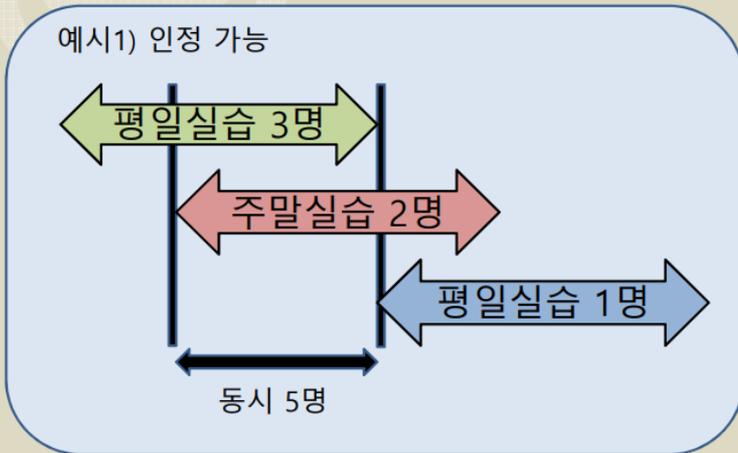
구분	기존	변경
실습시간	<u>120시간</u> 이상	<u>160시간</u>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법정무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보수교육 적용기준) 2020년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2019년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이수교육 이수 필수
2019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유예기간(6월30일까지) 동안 개설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지도를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 기관실습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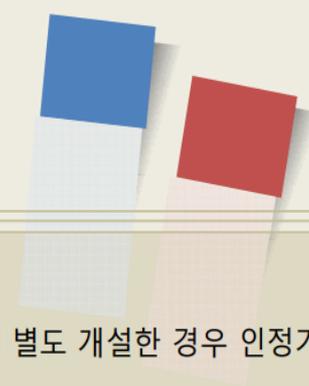
- 실습인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등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등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음(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가능)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 할 수 없음**)
- 실습세미나 교수 기준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 ※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